

일반대학원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운영 내규

제정 2019. 09. 16.

개정 2024. 11.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장(입학), 제5장(자격시험), 제6장(학위논문), 제9장(학위수여) 및 제10장(명예박사학위)의 시행과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 및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스마트운행체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적용되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2장 입학

제3조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병행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서류심사는 최종 학력 기준 성적을 정량평가하며,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정성평가 한다. 면접평가는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전공에 대한 지식,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및 외국어 능력과 같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사항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각각의 배점은 소정의 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4조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시행하되, 특별전형의 특성상 경력증명서와 추천서(자유양식)의 제출을 추가한다.

제3장 종합시험

제6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2/3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제8조 (출제방법)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9조 (시험과목) 일반대학원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제10조 (시험위원) 종합시험 대상자는 본인이 수강한 전공 교과목의 담당 교수 및 강사 중에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으며, 시험위원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종합시험 문제 출제와 평가를 책임진다.

제11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매 학기 대학원 종합시험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4장 학위 논문

제1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준용한다.

- ①. 수업연한 내 마지막 학기 등록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취득(예정)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신설 2011.8.17.)
- ②. 연구등록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신설 2011.8.17.)
- ③.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이상 발표한 자(논문게재증명서 포함). 단,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함(신설 2020.4.20.)

제13조의2 (학술지 논문 제출)

- ①. 적용범위: 2024학년도 1학기(전기)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SCIE급 논문을 주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는 경우에만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 ③. 공동 주저자의 경우 동일 논문으로 복수의 학생이 신청 불가능하다.
- ④.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 자격 검증 기간 전까지 게재예정서류(Accept letter) 또는 논문 출력본 미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제5장 보칙

제14조 (준용) 본 학과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14조의2 본 학과 내규가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 대학원 학위수여에 대한 내규에 배치될 경우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 대학원 학위수여에 대한 내규가 우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